

	공적심사위원회 규정	규정 번호	4-1-29
		제정 일자	2009. 12. 7.
		개정 일자	2024.3.20.
		책임부서/팀·계	기획처

제1조(명칭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공적심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2조(설치목적) 위원회는 총장 직속기구로서 교직원들의 공적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당연직위원은 각 처의 장으로 하고, 임명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<2021.08.20. 개정> <2023. 3. 30. 개정>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 <2019.11.14. 개정>, <2021.08.20. 개정>

제4조(심사대상) 공적심사 대상으로는 신안산대학교에 재직중이거나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로 학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.

제5조(심사사항) 이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직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에 관한 사항
2. 강의 및 성실도에 관한 사항
3. 연구 및 연구실적, 학생지도,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
4. 봉사활동 및 학교업무 참여도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회의 목적 수행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<2019.11.14. 개정>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.

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

제7조(사무처리기능) 위원회의 사무는 신안산대학교 기획처에서 담당하고, 사무처리를 위해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. <2021.08.20. 개정>

제8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9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